

# 기계체조 심판운영 매뉴얼

2023. 5. 28.

사단법인 대한체조협회

제정 2015.03.24.  
개정 2017.04.06.  
개정 2019.03.28.  
개정 2019.12.26.  
개정 2021.06.04.  
개정 2021.12.10.  
개정 2022.08.17.  
개정 2023.05.28.

##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본 매뉴얼은 대한체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규정 제6장 26조에 따라 제정 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운영 매뉴얼이라 칭한다.

## 제2장 심판자격 및 등록

**제2조(심판자격 취득)**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에서 개최하는 심판강습회에 참가하여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경기인등록규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심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심판강습회 참가자격)** 심판자격 취득을 위하여 심판강습회에 참가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 ① 기계체조 선수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② 체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③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기계체조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④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학교운동부 지도자(기계체조 종목에 한함)
- ※ 상기 ②,③의 학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체육분야 학위를 포함한다.

**제4조(심판자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자는 심판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① 경기인등록규정 제33조(등록 결격사유) ①항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삭제 2022.08.17.>
- ③ <삭제 2021.06.04.>

**제5조(심판등록 구분)** 심판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국제심판(국제체조연맹 심판자격 소지자로서 당해 사이클에 한함/4년 주기)
  - ② 국내심판 1급, 2급, 3급, 4급, 5급 <신설 2022.08.17.>
- ※ 상기 ②는 별도 심판자격과정 운영지침(심판등급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3장 심판배정과 업무

**제6조(심판배정 원칙)** 심판배정은 심판위원장의 주관하에 위원회에서 임의배정 또는 추첨으로 실시한다.

- ① 기계체조의 모든 대회 D1(난도)심판은 심판위원을 배정하되 심판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제심판, 국내심판 1급, 2급 순으로 배정할 수 있다.
- ② 기계체조의 모든 대회 D2(난도) 심판은 심판위원회 추천으로 국제심판, 1급 심판 및 2급 심판 또는 경기력향상 위원, 경기위원, 기획·연구위원 순으로 배정하고 국내심판 자격 소지자로 배정 할 수 도 있다. D2로 배정된 심판이 D2의 역할을 포기할 경우 라인과 타임으로 우선 배정될 수 있다. D심판으로 배정된 심판에게 대회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 ③ 모든 대회 E(실시) 심판은 각 시도의 추천을 받은 심판으로 배정하되 심판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심판으로) 전국체육대회의 경우 1급 ~ 3급 심판을 배정할 수도 있으며, 전국대회의 경우 1급 ~ 4급 심판을 배정할 수도 있다(심판 부족 시 4급 심판 배정 가능 단, 라인과 타임으로 우선 배정함). 5급 심판은 라인 심판, 타임 심판 및 E심판으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 ④ 모든 대회의 제3경기(종목별 결승경기) 출전선수와 동일 시도의 심판은 당해 경기의 심판 (D2 및 E심판) 배정에서 제외한다.
- ⑤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심판은 각 시도의 추천 대상자에 대한 자격을 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격 미충족자는 심판배정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다.

※ 추천대상자(심판업무 수행실적)

소년체전: 전년도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인자 + 시행년도 전국규모대회 1회 이상인 자

전국체전: 시행년도 전국규모대회 3회 이상인 자

\* 심판 부족 시 4급 심판 추천은 가능하지만 단, 시행년도 심판경력 우선순위로 배정한다.

<개정 2021.12.10>

\*\*상기 전국규모대회라 함은 본 협회 승인 대회(선발전 포함) 및 전국체육고등학교체조대회 (이하 “체고대항” 이라 함)와 중고연맹, 실업연맹 체조대회를 말한다. 체고대항과 중고연맹 그리고 실업연맹 대회는 대회당 0.5회의 심판실적을 인정해 준다{단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 협회 승인대회 3회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함}.

\*\*\*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심판업무 수행실적 제외(2024년도부터 시행) <개정 2023.5.28.>

- ⑥ 심판의 구성은 D심판 2명과 E심판 4명 ~ 7명을 배정할 수 있으며, 각 종목 특성에 따라 라인심판과 계시심판을 배정해야 한다. 심판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D심판이 E심판의 역할을 병행 할 수 도 있다. 단 전국체육대회는 D심판이 E심판의 역할을 병행할 수 없다.<개정 2021.12.10.>
- ⑦ 전국규모대회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심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심판위원 1급 및 2급 심판, 국제심판 자격소지자로서 2명을 배정할 수도 있다. 7심을 배정할 경우 2명의 공정심판 점수가 7심에 포함되어 최종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21.06.04.>

⑧ 심판업무 수행실적에서 심판자격을 소지하고 경기 위원회활동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심판을 보지 못할 경우 대회당 0.5회의 심판경험 실적으로 인정한다.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대회에 참가한다면 대회당 0.5회의 심판경험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06.04.>

⑨ 필요시 외국 국적을 소지한 국제심판을 국내 전국규모대회에 위원회 추천으로 심판배정을 할 수 있다.

⑩ 필요시 대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심판(TJ: Technical Judge)과 종목별 담당심판(SJ: Superior Jury)을 둘 수 있다. 역할과 임무는 국제체조연맹 채점규칙을 따른다.<신설 2021.06.04.>

## 제4장 심판활동 및 관리

### 제7조(심판활동 및 관리)

① 대회 참가심판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판배정에서 제외한다.

가. 심판업무와 관련한 심판위원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나. 심판회의 및 심판교육에 지각 또는 불참한 자

다. 심판배정 후 상호간 임의교체한 자

라. 점수와 관련하여 다른 심판에게 항의한 자

마. 고의성 없는 실수에 의한 오심을 1차 경고 후 반복하여 오심을 한 자

바. 해당 시도심판이 해당 시도선수와 팀에게 평균점수의 오차범위를 벗어난 점수를 부여한 자

② 대회 참가심판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판배정에서 제외하고 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가. D 심판이 관련규정에 의거 심판위원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E 심판의 점수 (E심판 점수 표출에 간섭하는 등의 행위) 및 D점수를 수정한 경우

나. 점수와 관련하여 담합(심판들끼리 표출한 점수를 물어보는 등의 부정행위)하거나 고의로 오심을 범했을 경우 또는 심판위원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E심판의 점수를 수정한 경우

다. 심판석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경우

라. 욕설 및 폭력행위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③ 심판과 관련하여 상기 외의 별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제체조연맹의 기술규정 및 채점 규칙에 준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체고대항, 중고연맹 그리고 실업연맹체조대회의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조직위(연맹체)에서 감독관 파견 요청 시 심판위원회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역할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심판확보, 심판배정, 대회운영은 각 연맹에서 추진한다.

나. 감독관은 기술적인 부분과 난도 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 역할을 한다.

다. 감독관이 파견될 경우 각 연맹에서는 체재비, 심판비 등의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⑤ 단, 상기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협회에서 관련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장 이의제기(소청)

**제8조(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국제체조연맹 및 협회 관련규정(심판위원회 규정 제22조 ⑤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점수 발표 직후 또는 1분 이내에 구두로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구두 이의제기 이후 4분 이내에 서면 (지정양식)으로 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의신청 시 공탁금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을 신청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사항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탁금은 환불한다.
- ③ 이의신청은 소속팀 코치에 의해 해당 소속선수의 난도(D)점수에 한하여만 가능하다.
- ④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는 공정평가심사단(부회장, 전무이사, 심판위원장, 심판부위원장, 심판위원 1인)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 ⑤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결정은 소속팀에 통보하고 경기장내 방송을 통하여 공지한다.

## 제6장 심판평가

**제9조(심판평가)** 위원회는 국제체조연맹 및 협회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판평가를 실시한다. 심판평가는 심판위원회규정 제19조에 의거 실시한다.

## 제7장 국제대회 심판파견

**제10조(국제대회 심판파견)** 심판위원회는 국제심판 자격소지자를 추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① 상위급수 자
- ② 해당 대회에서 규정한 조건 충족 자(급수, 연령 등)
- ③ 대회 참가를 통한 승급 가능자
- ④ 심판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 ⑤ 체육회나 협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8장 경기규칙 위반에 대한 규정

**제11조(경기규칙 위반에 대한 규정)**

- ① 소속 관계자가 심판에게 항의할 경우 1차시에 경기구역 접근을 금지하고 2차시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소속 관계자가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할 시에는 해당 경기의 최종 점에서 0.50점, 1.0점 감점 및 경기구역 접근을 금지하고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06.04.>

③ 소속 관계자와 관련하여 상기 외의 별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제체조연맹의 기술규정 및 채점규칙에 준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상기의 소속 관계자란 협회(체육회)의 선수 및 지도자 등록시스템에서 등재된 대표, 단장, 주무, 감독, 코치, 선수를 말한다.

### **부칙 (2015. 3. 24.)**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7. 4. 6.)**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9. 3. 28.)**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심판등록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1. 6. 4.)**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기계체조 심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1. 12. 10.)**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기계체조 심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2. 8. 17.)**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기계체조 심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3. 5. 28.)**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기계체조 심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심판업무 수행실적 제외는 2024년도부터 적용한다.